

[사법농단 ISSUE PAPER ④]

# 사법행정권 남용

-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2018. 7. 4. (수)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목차>

###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범농단의 실태

라. 평가

### **2. 법관에 대한 성향 · 동향 파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범농단의 실태 및 평가

## 사법행정권 남용

### -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동향 파악

#### 1.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 가. 사안의 개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이사야’)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 유도 방안을 검토하였다.

#####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sup>1)</sup>

2015. 2. 14. 시모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게시글 및 댓글을 분석하여, 상고법원 설치, 원세훈 사건 선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법원 인사 등에 관한 게시글 및 댓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처 방안으로, 카페의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며 실제로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1)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인용례에 따름. 이하 같음.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355, 356]

2015. 2. 15. 경 서울중앙지법 박모 판사(기획조정심의관 발령받은 상태)가 임종헌 기초실장 지시로 작성하여 정모 심의관 통해 보고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현황을 정리하고, 게시글의 유출 위험을 이유로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위험성 있는 글 삭제 ·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는 방안,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에 관한 주의 공지하는 방안, 인터넷 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추가 검토 [186, 187, 188]

2015. 2. 21. 경 임종헌 기초실장 지시로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문건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언급하며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법관을 통하여 ‘이 모 부장판사 사건을 통하여 법관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 역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안, 동료 및 선배 법관을 통해 운영진에게 유출시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주의 환기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이사야... 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26]

2015. 2. 26. 경 정모 판사(직전 행정처 심의관)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전달한 문건이다. ‘이사야’에 게시할 글 초안으로서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평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2015. 3. 2. 경 정모 판사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초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위 게시글 초안을 2015. 2. 27. 및 2015. 3. 1. ‘이사야’에 게시한 이후 그 조회수를

체크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긍정적 반응이 다수라며 카페의 동향을 분석하고 추후의 논의·논쟁의 추이를 관찰할 예정이라고 보고. 심지어 게시글 열람 추이를 지켜보며 ‘통상적으로 평일 낮 시간에도 접속이 상당히 빈번함’이라고 보고하는 등 판사들의 게시판 접속시간까지 파악하려 하였다.

◆ 이관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8]

2015. 3. 3. 경 정모 판사가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위 게시글 초안 게시 이후 카페 동향을 분석하면서, 민감 글 자진 삭제 문화 정착, 유출 가능성 자각,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글 작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 인터넷 익명게시판 추가 대응방안 검토 [29]

2015. 3. 9. 경 박모 심의관이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법관의 인터넷 활동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을 앞두고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카페 내부 논의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대법관 제청, 기업인 가석방, 땅콩회항, 판사구속, 상고법원, 전관예우, 신영철 퇴임, 원세훈 사건, 검찰비판, 언론과 재벌, 김영란법 등을 민감 글 사례로 분석하면서 기자 취재 시도 공개, 처장 당부사항 공지, 민감 글 삭제 내부 제안 등 이후의 민감 글 게시 통계 등을 분석하며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이후 카페 운영 방안으로, 카페 운영진이 글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방안,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일정기간 후 자동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유출 방지를 위해 복사 방지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위축 효과 지속 여부를 포함한 카페 활동의 지속적 추이 관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이후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이사야 익명 카페 동향 보고 [30]

2015. 4. 6. 경 박모 심의관이 임종헌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한 문건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의결 후 이사야의 주간 게시글을 분석하여 카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종전과 달리 대부분의 글에서 스크랩 및 복사 금지를 설정하는 추세이며 이사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방안 시행시까지 신속보고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 익명카페 설득논리 및 대응방안 검토 [33, 34]

2015. 7. 24. 경 기조실에서 작성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이사야의 개설자인 홍모 판사를 상대로 카페 운영방식 개선을 직접 권유할 예정이라면서 설득논리와 대응방안 검토하고 있다. 법관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법관들의 ‘해방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므로 고도의 자기 절제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홍모 판사가 법원장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최종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개설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커 바람직하지 않음은 종전에 검토한 바와 같다고 하면서 부장판사 이상 선배 법관 등이 대거 가입하여 코트넷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배법관이 자신의 직무를 밝히고 해명할 경우 가입 법관들이 게시글이 사실상 공개된다는 부담감을 느껴 글 작성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법관 익명 카페 개설자와 소속 법원장 면담 후속조치 [31]

2015. 8. 경 박모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이다.  
2015. 8. 12. 홍모 판사(이사야 운영자)와 소속 법원장인 인천지방법원장(김동오)의 면담 결과를 정리하고 홍모 판사에게 제공할 이사야 공지 글 초안을 검토한 문건이다.

위 공지글 초안에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법관이 있다거나 전관예우로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다거나 하는 법관들의 글이 유출되면 전관예우에 관하여 법원이 방어할 논리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내용, ‘부장판사가 기록은 보지 않고 사건처리 통계만 압박한다거나 지원에서 사무부담은 정치관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이라는 등의 게시글이 알려지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는 내용, 복사 방지 등 기능을 활용하여 유출 가능성을 줄이거나 일정기간 후에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 들어 있다.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2015. 2. 경 임종헌 기초실장은 이영한 부장판사의 정치편향, 막말 익명 댓글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사야 게시글이 유출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배 법관이 운영진에게 위험성 있는 글 삭제, 실명화 등을 권유하는 방안,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하는 방안, 법관 전체에 익명글 작성에 관한 주의 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 2015. 2. 27. 및 2015. 3. 1. 정모 판사가 자신의 배우자인 김모 판사의 아이디로(김모 판사는 2015. 2. 3. 이사야 가입신청) 이사야 게시판에 접속하여 민감한 글은 일정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글에 대한 반응과 이사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보고하였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사야 회원들에게는

경각심을, 운영진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특히 아사야의 운영자인 홍모 판사와 홍모 판사의 소속 법원장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이 자리에서 미리 작성된 카페 게시글을 전달한 사실은 단순히 동향을 감시, 보고 한 차원을 넘어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 다. 사법농단의 실태

법원노조는 2018. 5. 30. 양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부분도 포함시켰다. 뒤이어 2018. 6. 5.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고발인 양승태, 임종헌이 형식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법행정 사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의견 표명을 억제하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발인 정다주 판사를 통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글을 회원 내부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이사야’ 운영자 홍00 판사를 통하여 일정 기간 후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행정처 소속법관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2018. 6. 1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요청하였는데,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특조단이 확인한 410개의 행정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현직 법관들 모임인 ‘이판사판야단법석’(이사야) 카페 운영에 개입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의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신문, 2018. 6. 19. “檢,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직권남용죄 등 적용 가능 판단”).



## 라. 평가

특별조사단은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344] 문건이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실제로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야 자진 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355] 문건에서 이사야에 선배 법관이 다수 가입해 내부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 역시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방안들을 검토한 것은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 나아가 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이사야의 분위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을 논의하고, 마치 이사야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처럼 하여 그와 같은 글을 실제로 게시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후 이사야의 동향을 파악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이라면서 ‘사법행정권의 남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이사야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위계로 이사야를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사야가 익명 카페로서 게시글의 명의자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 판사가 이사야 회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며,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고, 이와 같은 글을 장기간 지속적·연속적으로 게시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속 법원장이 이사야 운영자에게 민감한 내용의 게시글 유출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 자체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처가 이를 넘어서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할 공지글 초안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서 부적절한 행사라고 할 것임”이라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이사야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회원들의 게시물 작성에 대하여 ‘위축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검토 및 이를 위한 ‘작전 글’을 게시한 점, 이사야 운영자에 대하여 소속 법원장이 면담을 하고, 법원행정처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지글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며 초안을 전달한 점 등은 충분히 소속 법원장이라는 상급자에 의한 위력의 행사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게시물 작성의 ‘위축효과’를 통한 표현의 자유(카페운영목적)의 원활한 유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특히 임종현 등이 이사야 운영자 홍모 판사에 대하여 논쟁적인 글을 일정 기간 후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압박한 점은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넘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사법행정권은 사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으로 법원 직원의 임면 및 감독과 법원의 회계·경리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 하여도 법관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주고받는 익명게시판을 사찰하고 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작전 글을 게시하는 데다 상급자로 하여금 운영자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한 행위를 행정권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본 특별조사단의 해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못해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위 문건의 작성자들이 스스로 밝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 했던 자들이 다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법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안에 연루된 법관들은 형사적 책임 여부를 떠나 이미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 2.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 가. 사안의 개요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행정처의 김민수 심의관 등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지시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왔다.

특조단은 “의혹별 조사결과” 초두에서 “<조사의 개요와 평가의 기준>”을 기재하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 훼손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 중에서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잘못’으로 분류, 평가하였다”고 하면서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부적절

이나 잘못이 누적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보고서 19쪽). 이러한 기준은 직권남용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보이고(특조단이 스스로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조사단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차성한 판사에 대한 뒷조사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특조단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했지만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 ◆ 차성한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18]

김민수 심의관이 임종현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본 문건은 차성한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차성한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고 법원에 대한 견해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본 문건은 탐문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고법 95나44148 판결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사건 참고). 차성한 판사의 개인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그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의 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 차성한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검직허가 [45]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하여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본 문건은 상고법원 반대의 논조로 시사인에 5회에 걸쳐 글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건 자체만 보면 윤리감사관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차 판사의 상고 법원에 대한 입장 때문에 기조실 주도의 동향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고법원 반대 입장의 내용을 언론사에 기고한 행위 자체를 타겟으로 삼아 징계를 검토한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차성안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320]

김민수 심의관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작성한 본 문건은 차 판사가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분석한 것을 다루고 있다. 차 판사가 하급심 충실화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데, 진보 매체인 시사인 편집팀에서 차 판사의 이러한 의견을 왜곡하여 대법원과 판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취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리감사관실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선부른 조치를 하기엔 여론의 역풍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문제 부분에 대한 안내, 예의주시, 일선 판사들의 오해 불식 등을 제시하였고, ‘예의주시’ 부분에서는 특히 “차 판사가 존경하는 선배, 친한 선후배 명단 취합 정리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본 문건은 순번 1번 문건에서 대응방안으로 언급된 ‘선배판사의 설득’을 차성안 판사의 친척인 차00 판사를 통해 실행했으나 실패했다고 기재하고 있어, 문건에서 논의한 대응방안을 실제 실행하였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대 학생회, 법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고시공부를 하던 중에도 성폭력 등 사안에 대자보 → 비주류 운동가형”이라고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탐문을 통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칼럼 투고 자체가 아니라 칼럼의 내용인데...”라는 문구 등에서는 동향, 성향 파악 및 징계 검토의 목적이 결국은 상고법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여론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원장을 통한 면담에서 거론할 부분” 이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 지원장 면담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행정처의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지원장을 통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조선일보와 관련한 문건들이 차 판사의 시사인 기고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특이사항 검토 [39]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차성안 판사에 대한 특이사항으로 코트넷 게시글의 제목과 일자, 시사인 기고문의 일자 등이 정리되어 있고, 2009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차 판사의 재산신고 내역을 정리한 표와 변화추이가 기재된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사인간의 채무가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본 문건의 작성 행위는 재산신고내역을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용한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 문건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검토의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나 전체 내용, 작성 시기(2016. 3. ~ 5. 경. 인사모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이 다수 작성된 시기와 일치함)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의심되어 검토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차 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인 압박을 가할 수단을 찾기 위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 [342]

2015. 1.~ 2. 기조실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성향 분석 부분은 주변 판사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게시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건의 작성경위, 목적은 조사단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 박노수 판사의 동향 관련 자료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본 자료가 포함된 파일 내용이 깨져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 각급 법원 주기적 검토 방안 [354]

본 문건은 임효량 심의관이 2016. 8.경 임종헌 차장의 지시를 김민수 심의관을 통해 전달받아 작성했다. 거점법관(행정처 출신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정보수집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법원장 등을 통해 점검, 대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위 내용 이외의 뒷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전 차장은 이 문건을 반려했다 하여 실행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탐문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실제 거점법관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해도 행정처 출신 등 정보를 수집하는 법관이 법원별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346]

박상언 심의관이 2015. 7. 경 임종헌 기조실장의 지시로 주된 부분을 작성하였

다. 이 문건은 인사모 예비모임 제안 무렵인 2015. 7. 6. 경 작성된 것으로서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가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온 근거자료라는 취지로 조사단은 판단하였다.

##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특조단은 법관에 대한 성향, 동향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문건들을 정리하였는데 종합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보고서 99쪽)

특히 특조단은 행정처에서 “차성안 판사의 게시글, 기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기고의 결격허가 필요성, 품위유지의무, 공정성 유지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재산관계 특이사항까지 검토한 것은 특정 판사에 대한 뒷조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한편 특조단은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처 심의관들이 다른 법관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이사야 게시글을 확인한 것은 그 수단의 적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행정처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 할 것”이라고 보았다.



#### 다.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특조단은 차성안 판사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시자인 임종현 전 차장을 기준으로 인적 책임을 묻는다고 보면, 차성안 판사 뿐만 아니라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송승용 판사 등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특조단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직권남용죄 성립과 관련하여 관례는 지시를 행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특조단은 이 부분 종합검토에서 이미 그러한 검토를 거쳐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 및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보고서 99쪽). 우병우에 대한 직권남용 관련 1심 판결(민정비서관으로서의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업무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위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초 검토 내용과 다르게 전원회의에 심사관 조치의견이라는 문건을 보고하게 하고 고발 의견을 진술하게 했다는 취지), 김종덕에 대한 직권남용 항소심 판결(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자들의 지원배제를 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심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사정을 언급하게 한다든지 명단을 송부한 행위들도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인정), 앞서 언급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관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판사들에 대한 동향성향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추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성안 판사에 대한 문건에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만약 행정처에서 대법원 전산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조사보고서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대부분의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으나 애초 박병대 전 행정처장이 2015. 7.경 인사모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하고 그 무렵부터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논의사항 등을 확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박병대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조사결과(보고서 20쪽), 이 무렵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 및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정책의 추진을 위해 BH에 협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던 점, 전체 문건 중에서 임종헌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한 문서들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들도 임종헌 전 차장을 최종 보고받는 자로 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각 처장 및 대법원장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